

법인세 신고안내문 재중

2019년 법인세 신고 안내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사업이 번창하시기를 바랍니다.

2019년 법인세 신고·납부와 관련된 안내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법인세 신고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홈택스의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오니 신고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고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납부에 관한 사항

- 신고·납부기한 : 4월 1일까지(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법인 및 연결납세방식 적용법인은 4월 30일까지)
- 신고대상법인 :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법인
*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도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신고·납부 방법

- 전자신고 (이용시간 : 06:00 ~ 24:00)
 -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법인세 → 정기신고 → 신고서 작성 → 전송 → 접수증 확인
- 전자납부 (이용시간 : 07:00 ~ 23:30, 단 카드납부는 00:30 ~ 23:30)
 - 홈택스 납부 : 홈택스(www.hometax.go.kr)→신고/납부→세금납부/국세납부→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신용카드 납부 : 카드로택스(www.cardrotax.kr)→국세→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결제방법(신용카드)
 - 모바일 납부 : 모바일홈택스 로그인(공인인증서)→신고/납부→국세납부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 접근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 팝업창 →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원스톱 접근)
*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도 가능
-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
 - 연도별 신고상황, 신고 시 참고할 자료, 신고 시 유의사항, 맞춤형 절세 Tip, 세법도움미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성실신고지원 → 법인세)에서도 법인세 신고에 유용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인의 인건비 부담과 노동자의 고용불안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으로 해결하세요. (문의·상담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센터 1350)

2019년 2월 일

세무서장 (관인생략)